

■ 사실 관계

- XXXX.XX.XX.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가 수리되었고,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
- XXXX.XX.XX. 쟁점부동산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 XXXX.XX.XX. 신청법인 농업경영정보* 최초 등록
 - * 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대상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에 한함
- XXXX.XX.XX.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요건 미비(취득일 이후 등록)로 기각
- XXXX.XX.XX. 신청법인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제기

■ 쟁점 사항

-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등록이 지연된 사정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법인 주장

- 신청법인은 농산물 가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관계 기관 사이의 전산 연계 및 행정처리 문제로 지연된 것이다. 법인등기부등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확인증을 제출하였음에도 등록이 늦어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법정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종합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대상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 신청법인은 기존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된 경우로서 이를 설립등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설령 변경등기일을 설립등기일로 보더라도 90일이 지난 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다. 또한 등록 지연이 관계 기관의 전산·행정처리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